KOSHA GUIDE

C - 98 - 2014

- (바)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 시는 휴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사) 철탑 암의 애자 끝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.
- (6) 발받침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발받침을 나무로 시공할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미터 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묶어야 한다.
- (나)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.8미터 이하, 장선 방향에서는 1.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다)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이상인 도로·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은 설치 전에 관계자와 협의, 전선에 절연 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.
- (바)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, 위험표지, 다용도 안전경보기,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·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.
- (사) 철제 발받침을 전기설비 보호용으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(아)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지선 등으로 보강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3> 발받침 설치



<그림 34> 보선원 배치